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19호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 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상주시의회 의장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요금 체납의 사유(실직, 폐업 등) 삭제(제3조제9호)
- 나. 주택임차료 체납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제3조제1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23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 koym90@korea.kr
-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 3) 팩 스: 054-535-985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54-537-78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